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방송통신위원회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2020. 7



방송통신위원회



유의사항

- 본 안내서는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년 6월 11일 시행, 법률 제16825호)』을 광고성 정보 전송자가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여, 실무상 혼란을 방지하고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되었습니다.
- 본 안내서의 판권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소유하고 있으며, 이용자는 본 안내서를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하고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형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금지합니다. 또한, 이용·가공·인용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 안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되어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https://spam.kisa.or.kr>) 자료실에 게시됩니다.

제·개정 이력

순번	제·개정일	변경내용	발간팀	연락처
1	2014.12	제정	스팸대응팀	118
2	2015. 9	개정	스팸대응팀	118
3	2016. 6	개정	스팸대응팀	118
4	2016.12	개정	스팸대응팀	118
5	2017.11	개정	스팸대응팀	118
6	2020. 7	개정	스팸정책팀	118

목 차

I 개요

- | | |
|----------------------------|---|
| 1. 스팸의 개념 및 스팸방지의 필요성..... | 6 |
| 2. 적용 범위..... | 9 |

II 법률 및 시행령의 주요내용

- | | |
|-----------------------------------|----|
| 1.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적용범위 | 12 |
| 2. 명시적인 사전 동의..... | 18 |
| 3. 수신거부 및 사전 동의 철회..... | 24 |
| 4. 야간광고 전송제한 및 예외..... | 26 |
| 5. 광고성 정보 전송시 명시사항..... | 27 |
| 6. 광고성 정보 전송자 금지사항..... | 29 |
| 7.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시 비용 발생 금지 | 32 |
| 8. 처리결과 통지..... | 33 |
| 9. 수신동의 여부 확인..... | 36 |
| 10. 광고전송 위탁..... | 38 |
| 1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거부 등..... | 40 |
| 12. 광고성 프로그램등의 설치..... | 43 |
| 13.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 45 |
| 14. 법률에서 금지하는 광고성 정보의 전송 금지..... | 47 |
| 15. 법 위반 행위를 하도록 한 자..... | 48 |

III 부록

- | | |
|------------------------------|----|
| 1. 전송매체별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 | 52 |
|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 62 |
| 3. 정보통신망법 스팸 관련 규정..... | 64 |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I

개요

1. 스팸의 개념 및 스팸방지의 필요성
2. 적용 범위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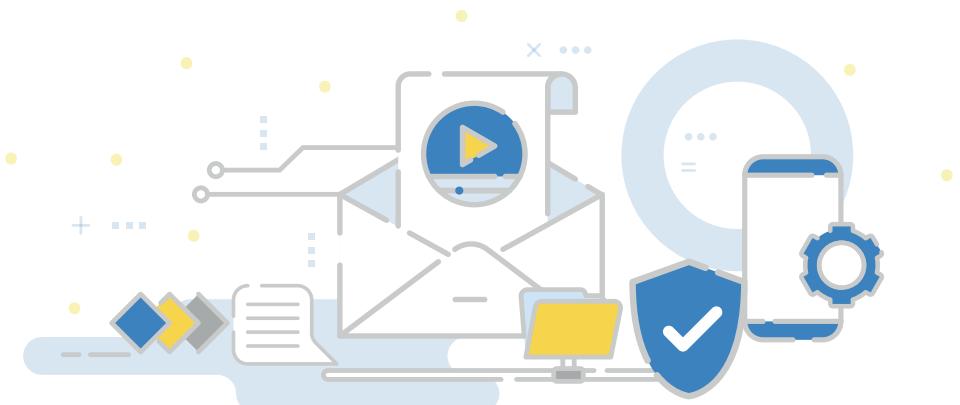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개요

1 스팸의 개념 및 스팸방지의 필요성

가. 개념

-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 “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50조부터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불법스팸은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스팸 관련 규정

조항	주요 내용	비고	벌칙
제50조	제1항 ■ 수신자의 사전동의 없는 광고전송 금지 • 예외1 재화 등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 • 예외2 방문판매법에 따른 전화권유	공통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2항 ■ 수신거부 및 사전동의 철회시 광고전송 금지		
	제3항 ■ “21시~익일 8시” 광고전송 금지	이메일 제외	
	제4항 ■ 광고성 정보 전송시 표기의무 준수	공통	
	제5항 ■ 광고성 정보 전송시 금지 조치 • 수신거부 및 동의철회 회피·방해 • 수신자 연락처 자동 생성 • 수신자 연락처 자동 등록 • 전송자 정보 은폐·위변조 • 원링 스팸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제6항 ■ 무료 수신거부/수신동의 철회 조치		
	제7항 ■ 수신거부 등 처리결과의 통지		
	제8항 ■ 정기적인 수신동의 여부 확인		
제50조의4 제4항	■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는 서비스의 제공 거부 및 서비스 취약점 개선 등 필요한 조치 강구 의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50조의5	■ 동의 없는 광고 프로그램 설치 금지	애드웨어 등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50조의7	■ 사전 동의 없는 광고 게시 금지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글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 예외	
제50조의8	■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나. 스팸방지의 필요성

- 정보화 사회에 들어서면서부터 종이문서로 된 광고가 아닌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적 형태로 전송되는 광고성 정보가 등장하게 되었고 이러한 광고성 정보는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 때문에 전송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 수신자가 수신을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량의 스팸이 전송되고 있어서 수신자는 불필요한 정보를 수신하고, 이를 확인·삭제하거나 수신을 거부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 불법스팸은 짜증과 불편을 유발하는 성가신 마케팅 기법에 그치지 않고, 불법도박, 불법대출 등 불법적인 서비스 사용을 유도하여 이용자의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는 등 불법행위의 관문으로 기능하여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지금까지 스팸 전송을 차단하기 위하여 많은 정책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여 왔지만, 스팸 전송 기술 역시 꾸준히 발달함에 따라 스팸 차단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광고성 정보는 전송단계에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크기 때문에 사업자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 따라서 정부기관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이 협력하여 국민들의 스팸감축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이를 통하여 국민이 행복한 통신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적용 범위

- 정보통신망법 제50조는 스팸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광고성 정보 전송 등에 대한 규제를 두고 있는 규정입니다.
- 광고성 정보 전송관련 규정은 이용자의 사생활의 평온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어서 규제의 대상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모든 광고성 정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송된 정보가 이용자의 사적영역을 침범하여 들어오는 경우를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즉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휴대전화, 이메일과 같이 이용자의 사적영역에 해당하는 특정 매체로 이용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 대해 규제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 따라서 TV광고나 인터넷 홈페이지 배너광고·팝업 광고 등도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지만, 이용자가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가 해당 광고가 노출되는 곳으로 접근 하여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게 되는 광고성 정보로 스팸 규제의 대상이 되는 광고성 정보와 구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및 시행령의 주요내용

1.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적용범위
2. 명시적인 사전 동의
3. 수신거부 및 사전 동의 철회
4. 야간광고 전송제한 및 예외
5. 광고성 정보 전송시 명시사항
6. 광고성 정보 전송자 금지사항
7.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시 비용 발생 금지
8. 처리결과 통지
9. 수신동의 여부 확인
10. 광고전송 위탁
1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거부 등
12. 광고성 프로그램등의 설치
13.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14. 법률에서 금지하는 광고성 정보의 전송 금지
15. 법 위반 행위를 하도록 한 자

II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법률 및 시행령의 주요내용

1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적용범위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1. 재화 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동종의 재화 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시행령

제61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 ① 법 제5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이란 해당 재화등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을 말한다.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가. “누구든지”란 상시적으로 영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영리 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라면 개인, 공공기관, 단체, 법인 등을 포함하여 누구에게나 제50조의 제한이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나. “전자적 전송매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호·문자·음성·화상·영상 등을 수신자에게 전자적 형태로 정보의 전송이 가능한 모든 매체(유선전화, 휴대전화, 팩스, PC, 태블릿 PC 등 수신자가 보유하는 통신수단으로 정보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일체의 매체)를 의미합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항13호에 「“전자적 전송매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호·문자·음성·화상 또는 영상 등을 수신자에게 전자문서 등의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란 전송자가 널리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전송하는 ①전송자 등에 관한 정보, ②전송자 등이 제공할 재화나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 영리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자가 고객에게 보내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두 광고성 정보에 해당합니다. 다만, “라.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영업사원이 고객관리 차원에서 보내는 안부인사, 사업자가 고객에게 보내는 무료 뉴스레터 등도 원칙적으로 광고성 정보에 해당합니다.

※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쿠폰, 마일리지 등의 경우 해당 재화 및 서비스 이용을 촉구하는 홍보 목적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쿠폰, 마일리지 등에 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광고성 정보에 해당합니다.

※ 수신자가 요청하거나 수신자와의 계약관계나 거래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제공(회원가입 기념 쿠폰, 생일 기념 쿠폰, 1주년 기념 쿠폰 등)한 쿠폰 및 마일리지의 소멸안내는 원칙적으로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에 해당 합니다.

- “영리”라 함은 법인의 성격으로서의 “영리” 여부가 아닌 그 행위 자체가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 위한 행위 전체로 보아야 합니다. 계약관계 또는 거래조건에 따라 주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부수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것 이외에 새로운 경제적 이익이나 이해관계를 추구하려는 목적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이는 영리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서 ‘영리’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구별하는데 사용되는 ‘영리’의 개념(이익을 그 구성원에게 배분하는지 여부)과 다릅니다. 비영리법인이 전송하는 광고성 정보라 하여도 정보의 성격에 따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가 아니더라도 수신자에게 발송하는 광고성 정보가 전송자의 이미지 홍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성 정보로 볼 수 있습니다.
- 주된 정보가 광고성 정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수적으로 광고성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정보 전체가 광고성 정보에 해당합니다.
※ 신용카드 거래내역(결제)정보를 이메일로 전송하면서 하단에 광고성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이메일 전체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로 봅니다.

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예외

판단
기준

광고성 정보의 예외는 전송자와 수신자 양측의 입장 및 양자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전송자의 입장에서 고객의 생일기념, 할인쿠폰 등 혜택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수신자에게 전송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광고성 정보의 예외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수신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거부 하더라도 전송자와 수신자 간의 계약이나 거래 관계로 인하여 수신자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광고성 정보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원칙1

전송자와 수신자간 체결된 계약이행 등과 관련한 정보는 광고성 정보의 예외로 봅니다.

- 계약체결 이전 단계에서 수신자의 특정한 요청에 따라 발송하는 1회성 정보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예외로 봅니다.
 - ※ '수신자의 특정한 요청'이란, 견적서, 상품 카탈로그(자동차의 연비, 제원, 편의, 외장, 내장 등에 대한 설명자료 등) 등 특정 고객이 재화 또는 서비스의 계약체결을 위해 구체적으로 요청한 정보에 한정함
- 전송자와 수신자가 체결 또는 합의한 계약 및 거래에 따라 수신자의 이익을 위하여 수신자에게 제공해야하는 정보로 다음 여섯 가지에 해당할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예외로 봅니다.
 - ① 계약 및 거래 시 수신자가 재화 및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설명 및 내용
 - ※ 최초 전자제품 설치 후 작동 동영상 링크 주소 및 FAQ가 게시된 홈페이지 주소 등의 제공 등
 - ② 수신자와 체결한 거래를 용이하게 하거나, 완성 또는 확인하는 것이 목적인 정보
 - ※ 숙박시설 예약 후 수신자가 이용할 객실번호 및 이용날짜 등 확인 정보 등
 - ③ 수신자에게 제공한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보증 내용
 - ④ 체결 또는 합의한 계약 및 거래 내용의 변경 내용
 - ※ 회원 등급 변경·포인트 소멸 안내 등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조건 또는 특징에 대한 변경 등
 - ⑤ 수신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내용
 - ※ 오작동 등으로 인하여 화재위험이 있는 전자제품이 리콜 대상임을 안내해야 하는 경우 등
 - ⑥ 서비스의 보안 관련 내용 및 업데이트 내용 등의 정보
 - ※ 보이스피싱/스미싱 주의 안내, 소프트웨어의 보안 및 업데이트 등을 위한 패치 프로그램 배포 등
- 수신자가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제공받는 정보(유료 뉴스레터, 주식정보, 축산물 거래정보 등)와 같이 전송자가 계약상 의무이행을 위해 전송하는 정보
- 수신자가 신청한 경품 및 사은품 지급을 위한 정보

- 정보제공을 서비스로 하는 자가 수신자와 체결한 계약이나 기타 약관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전송하되 이를 대가로 직접적인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정보의 내용이 재화 또는 서비스의 구매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보
※ 일기예보 앱에서 제공하는 날씨 정보, 택배추적 앱에서 제공하는 택배 위치 정보, 미디어 매체에서 제공하는 뉴스 정보는 광고성 정보 예외에 해당

원칙2 공익목적을 위한 광고성 정보는 예외로 봅니다.

- 전송자가 제공하는(판매하는) 서비스·재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오로지 공익목적을 위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재화에 관한 정보
※ 기업 등이 무상으로 진행하는 공익활동 안내 정보(장학금 지급 등)가 이에 해당

기타

위에서 설명한 광고성 정보의 예외에 해당하는 정보에 아래 정보를 포함하더라도 해당 정보 전체를 예외로 볼 수 있습니다.

- 광고성 정보로 연결된다는 것을 안내하는 정보로서 1개월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전송하는 비광고성 정보 하단에 들어가 있으며, 수신자가 추가적으로 일정한 행위(클릭 등)를 하는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링크 페이지 펼치기 등)를 취해 전송하는 경우
※ 1개월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전송하는 비광고성 정보로는 “요금고지서”, “카드결제내역”, “보험료 결제내역” 등 월별 결제 안내 등이 포함되지만 수시로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포인트 발생·소멸 안내, 실시간 결제 내역 안내 등은 정기적으로 전송하는 것이 아니므로 포함되지 않음
※ 수신자가 클릭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광고성 정보가 노출됨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광고 안내 정보가 비광고성 정보의 가시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함
※ 전송자가 취급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한하여 광고 안내 정보 전송이 가능
- 본 ‘라’에서 열거한 정보에 추가된 간단한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요청 정보

마. “전송”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수신자의 사적 영역인 휴대전화, 이메일 등에 정보가 전송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수신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포털 사이트, 어플리케이션 등에 접속하여 보게 되는 배너광고나, 방송프로그램 시청 시 보게 되는 TV 광고 등은 본 안내서에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명시적인 사전 동의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1. 재화 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동종의 재화 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시행령

제61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 ① 법 제5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이란 해당 재화등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을 말한다.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사전에 수신자에게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함

가. 명시적인 사전 동의

- “명시적인 사전 동의”란 수신자가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시 추후 광고를 수신할 수 있다는 것과 광고성 정보의 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분명하게 알린 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사전 동의 방식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은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방식에 제한은 없지만, 전송자는 수신자로부터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법령상 수신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과 개인정보 이용 목적에 대한 동의는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 동의)와 구분됩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는 전송자가 보내는 광고성 정보를 수신하겠다는 것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므로 각 동의는 별개로 받아야 합니다.
- 명시적 사전 동의로 볼 수 없는 사례

① 이메일 혹은 SMS 수신동의가 있지만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로 보기 어려운 경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이메일	<input type="text"/>	이메일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input checked="" type="radio"/> 예	<input type="radio"/> 아니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휴대폰	010 ▾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SMS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input checked="" type="radio"/> 예	<input type="radio"/> 아니오

이메일/SMS 수신여부

이메일 수신여부 수신 수신안함

SMS 수신여부 수신 수신안함

② 뉴스레터 등 메일링 서비스에 대한 수신 동의가 있지만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로 보기 어려운 경우

E-mail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checked="" type="checkbox"/> 뉴스레터 수신동의	
* 주요 공지사항 및 이벤트 당첨 안내 등은 수신 등의 여부에 관계없이 발송됩니다.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만 받고 있어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로 보기 어려운 경우

■ 고객정보 기재란

성명		연령대	
거주지역		연락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등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항목	이용 및 수집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성명, 거주지역, 연락처	OOO 분양정보 및 이벤트 안내(문자 및 전화)	당 현장 분양종료시까지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을 원치 않을 경우 철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철회 시 정보제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의 사항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안함

본인은 상기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0년 7월 7일 동의 :

(서명)

- 스마트폰 앱을 설치한 이용자에게 앱 푸쉬알림 기능을 통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50조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앱 푸쉬를 이용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수신자로부터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앱과 관련한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사항은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https://spam.kisa.or.kr>)에서 앱 푸쉬(App Push) 광고 안내서 확인

- 오로지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의 수신 동의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문자, 이메일, 팩스 등을 전송하거나 전화를 거는 행위는 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것으로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 거래관계를 통한 사전 동의 의무 예외

대가를 지불한 거래관계를 통해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사업자가 거래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사전 동의 의무 예외에 해당

-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한 거래관계가 존재해야 하며, 단순한 문의나 회원가입 등은 거래관계의 성립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원칙상 전송자는 수신자로부터 연락처를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
 - ※ 영업점을 인수하면서 양도인으로부터 연락처가 포함된 고객명단을 넘겨받은 경우에는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것이 아닙니다.
 - ※ 쇼핑몰 및 배달앱 등의 운영자가 판매자 대신 구매자의 연락처를 수집하여 준 경우 직접 수집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6개월의 기산 시점은 최종적으로 사업자의 재화 및 서비스의 제공이 종료된 날(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시작됩니다.
- “동종의 재화 등”이란 해당 사업자가 취급하는 것으로 수신자가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 등을 의미합니다.
- 사업자가 사업자(B2B)와의 거래관계 형성을 위해 명함 등 서면으로 직접 연락처를 제공한 경우 사전동의 예외로서의 거래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 B2B(Business to Business, 사업자가 사업자를 대상으로 각종 서비스나 재화 등을 판매하는 방식의 거래) 특성을 고려하여 명함 등 서면으로 연락처의 제공이 있는 경우 거래에 대한 청약의 유인으로 보아 거래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 ※ 수신동의 예외사유로 B2B 거래관계를 주장하려는 자는 단순히 명함 등의 소지뿐만이 아니라 수신자에게 언제 어디서 명함 등을 직접 제공받았는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 전화권유판매를 통한 사전 동의 의무 예외

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② 육성으로 ③ 수신자의 개인정보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판매를 하는 경우 수신동의 의무 예외에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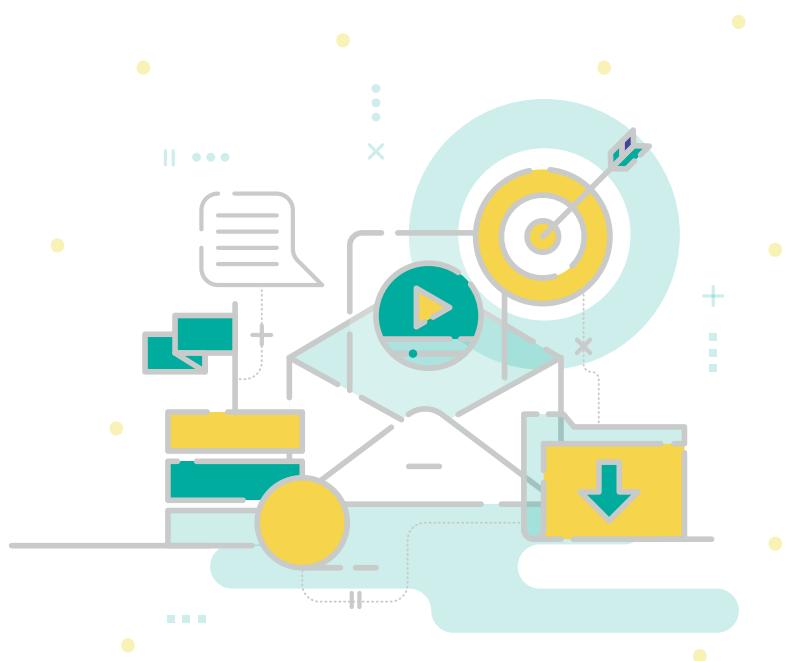
- “전화권유판매자”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성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재화 및 서비스 등을 판매하는 자를 말합니다.
 - ※ 전화상으로 단순히 광고성 정보만 제공하고 판매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전 동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보험 전화권유판매¹⁾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사전 동의를 받고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야 합니다.
- “육성”이란 상담원이 녹음한 ARS나 기계음이 아닌 상담원이 직접 통화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 녹음된 상담원의 음성으로 최초 안내 후 상담원과 직접 통화를 하더라도 사전 동의 의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출처 고지”란 전화권유판매자가 수신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획득하였는지 안내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는 광고성 정보 안내를 시작하기 전에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 동의 의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수신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강요한다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거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거래

- 전화권유판매자의 광고성 전화를 한 번에 수신거부 하고자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https://www.donotcall.go.kr>)”에 등록 하면 됩니다.

라.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한 자의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76조 제1항 제7호



3 수신거부 및 사전 동의 철회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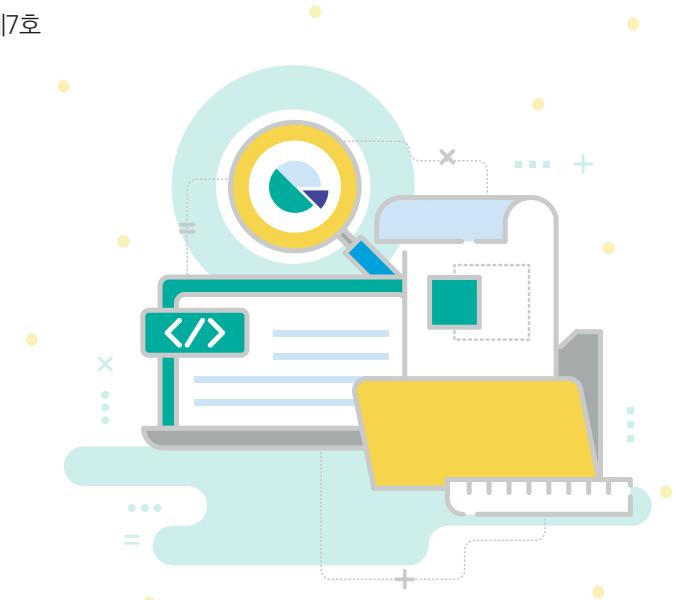
②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사전 동의를 받았거나 사전 동의 예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밝히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없음

- “제1항에도 불구하고”의 “제1항이란” 사전 동의를 받았거나 사전 동의 예외 (거래관계형성 등)에 해당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거래관계에 따른 사전 동의 예외가 적용되더라도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한 경우 광고성 정보의 전송이 금지됩니다.
- 또한 고객이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한 후 다시 거래관계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신거부의사의 표시는 그 효력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안됩니다.
- 수신자가 회원탈퇴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므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안 됩니다(휴면회원의 경우도 해당됨).

- 수신거부 또는 사전 동의의 철회는 그 의사를 표시한 때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므로 수신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때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됩니다.
 - 수신거부 및 사전 동의 철회는 원칙적으로 수신자에게 동의 받은 모든 영역에 효력이 있습니다.
- ※ 통합회원으로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 수신거부시 통합회원에 대한 모든 동의가 철회됩니다. 다만, 각 재화나 서비스 분야로 동의를 받은 경우 수신거부시 그 해당 분야에 한합니다.
- ※ 성인전화나 대리운전 광고 등의 경우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하면 전송자가 전송하는 해당 서비스 분야 모두가 수신거부 대상이 됩니다.
- 본사와 지사, 본사와 대리점에서 고객 정보를 공유할 경우 수신거부의사도 공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즉 한 번의 수신거부로 해당 본사 및 지사, 대리점에서 전송하는 광고에 대한 수신 거부 효력이 발생합니다.
 - 사전 동의 철회 및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하도록 한자의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76조 제1항 제7호



4 야간광고 전송제한 및 예외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③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령

제61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② 법 제5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란 전자우편을 말한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수신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았어도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에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한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수신자에게 도달하는 시각을 의미합니다. 국외에서 국내로 전송되는 광고성 정보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전자우편은 다른 매체에 비해 광고 수신확인의 즉시성이 떨어져 이용자의 통제가 비교적 용이하므로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수신자의 별도 동의가 없더라도 전송이 가능합니다.
- 야간시간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에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한 자의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76조 제1항 제7호

5 광고성 정보 전송시 명시사항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④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2.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시행령

제61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③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가 해당 정보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과 그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전자우편, 팩시밀리, 휴대전화, 그 밖의 전자적 전송매체별로 1)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2)수신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함

- “전송자의 명칭”은 수신자가 전송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업체명, 서비스명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전송자가 명시한 업체명 또는 서비스명으로는 전송자를 식별할 수 없는 때에는 전송자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전송자의 연락처”는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주소 등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와 직접적으로 연락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 ※ 명시된 연락처로 연락이 되지 않거나 다른 연락처를 재안내하거나, 또는 허위 연락처인 경우에는 연락처를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수신의 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을 광고성 정보의 본문에 표기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 전자우편 수신거부시 웹사이트에 로그인하도록 하는 등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를 어렵게 하는 것은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 전자적 전송매체(전자우편 제외)를 통해 광고성 정보 전송시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를 할 때 수신자에게 금전적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 문자광고 전송시 “무료”와 같이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을 안내하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광고성 정보 전송자가 광고 전송시 전송매체별(휴대전화, 전자우편, 팩스, 기타)로 명시해야할 사항과 방법은 ‘부록 1. 전송매체별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면서 매체별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자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한 자의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76조 제1항 제8호

6

광고성 정보 전송자 금지사항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⑤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방해하는 조치
2.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 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4.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
5.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조치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1)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회피·방해하는 조치, 2)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조치, 3) 전화번호 등을 자동으로 수집하는 조치, 4) 수신자가 전송자를 알 수 없게 하는 조치, 5) 원링스팸 등의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됨

가.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회피·방해하는 조치의 금지

- 이메일을 이용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수신거부가 되지 않도록 하거나(예: 페이지 오류로 나타나게 함), 문자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연락이 되지 않는 수신거부번호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의미합니다.

- 본 규정은 적극적으로 “회피·방해하는 조치”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제50조 제4항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을 소극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과 구분됩니다.

나.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의 금지

-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자동으로 수신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 주소 등의 연락처를 만들어 내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 오토콜 프로그램이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생성하여 전화를 걸거나, 엑셀 프로그램 등으로 전화번호 일부 또는 전체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것 등을 의미합니다.
-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광고성 정보의 전송여부와 상관없이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행위만으로도 처벌됩니다.

다.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의 금지

-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연락처를 확보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의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란 고객에게 받은 연락처를 전산 상에 자동으로 등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상 혹은 정보저장장치 등에 있는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보주체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수집하여 등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

- 음성 · 문자 · 팩스 등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발신번호는 전송자를 확인할 수 없는 번호로 변작(변경, 조작 등)하여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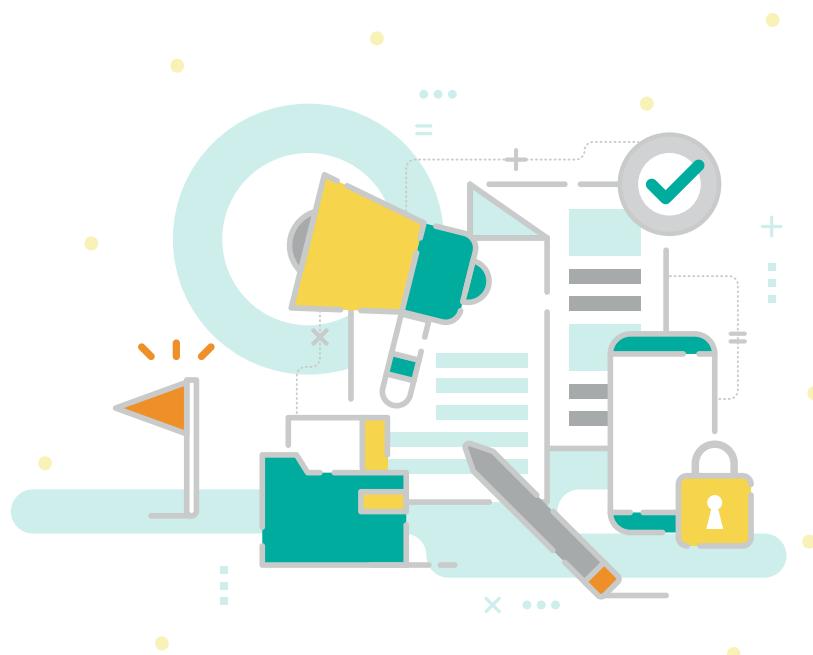
- 이메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발신자의 이메일 주소를 확인할 수 없게 하거나 다른 이메일 주소로 위·변조하여서는 안됩니다.

마. 수신자를 속이거나 착오에 빠지게 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조치

- 벨이 1~2번 울린 후 수신자가 받기 전에 끊거나 받은 후 바로 끊는 방식으로 수신자의 전화를 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바. 위 사항을 위반하는 자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합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4호



7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시 비용 발생 금지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⑥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62조(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의 제공)

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을 해당 정보에 명시하여 수신자에게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광고성 정보 수신자가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 시 전화요금 등 금전적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광고성 정보 전송자는 수신자가 금전적인 비용 부담없이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법(ex: 수신자 부담 080 착신과금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그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 각 전송매체별 자세한 명시사항과 명시방법은 부록1 참조

-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할 때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한자의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76조 제1항 제9호

8**처리결과 통지****법률****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⑦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가 제1항에 따른 사전 동의, 제2항에 따른 수신거부의사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해당 수신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 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시행령**제62조의2(수신동의 등 처리 결과의 통지)**

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수신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2. 수신자의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사실과 해당 의사를 표시한 날짜
3. 처리 결과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로부터 사전 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14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해야 함

- “14일 이내”란 해당 의사표시를 받은 날부터 14일을 의미합니다.

※ 예시) 5월 1일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5월 15일까지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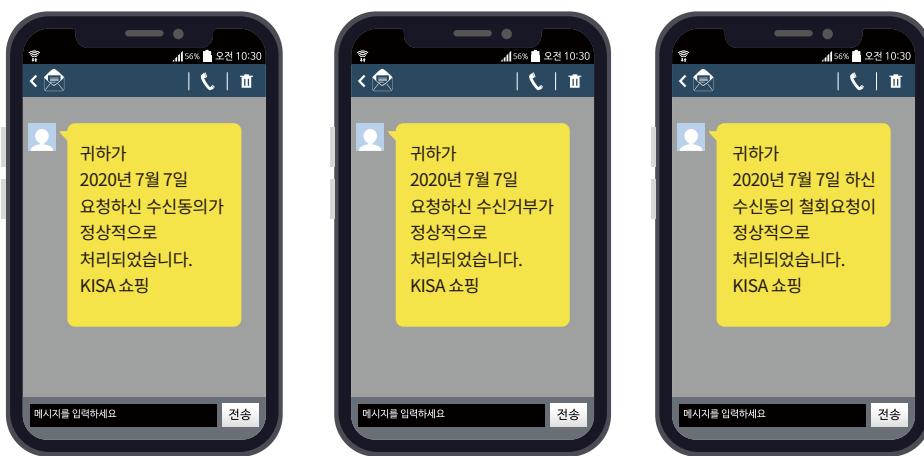
※ 오프라인으로 수신동의를 한 경우 시스템 등록 기준이 아닌 수신동의 등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 통지내용에는 ①전송자의 명칭, ②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사실, ③해당 의사를 표시한 날짜, ④처리 결과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예시) 귀하는 2020. 7. 7.(③해당 의사를 표시한 날짜) 주식회사 oo의(①전송자의 명칭) 마케팅 정보를 수신 동의하였고(②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사실), 이에 따라 수신 동의 처리 완료 되었습니다(④처리 결과)]
 - 의사표시 날짜를 “금일 ”또는 “오늘”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차후에 해당 날짜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의사를 표시한 날짜로 명시해야 합니다.
- 처리결과 통지시 통지내용 외에 광고성 정보를 포함하여 전송하여서는 안됩니다.
 - 수신자가 휴대전화에 ‘(광고)’등을 차단문구로 지정하여 둔 경우, 전송자가 처리결과 통지에 ‘(광고)’를 포함하여 전송하게 되면 수신자에게 처리결과 통지를 수신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처리 결과의 통지 방법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휴대전화 및 이메일 등 다수의 연락처가 있는 경우 전송자가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통지할 수 있습니다.
- 080 번호 등을 통하여 수신거부 요청시 곧바로 이를 처리한 후 육성이나 ARS 음성 등을 통하여 처리완료 사실을 실시간으로 통보해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안내하여야 할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 홈페이지나 휴대전화 앱 등에서 수신 거부시 이를 즉시 처리 한 후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서 아래와 같이 처리결과를 통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안내하여야 할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KISA쇼핑의 할인행사 정보를
2020년 7월 7일 수신 거부하셨고,
이에 따라 수신거부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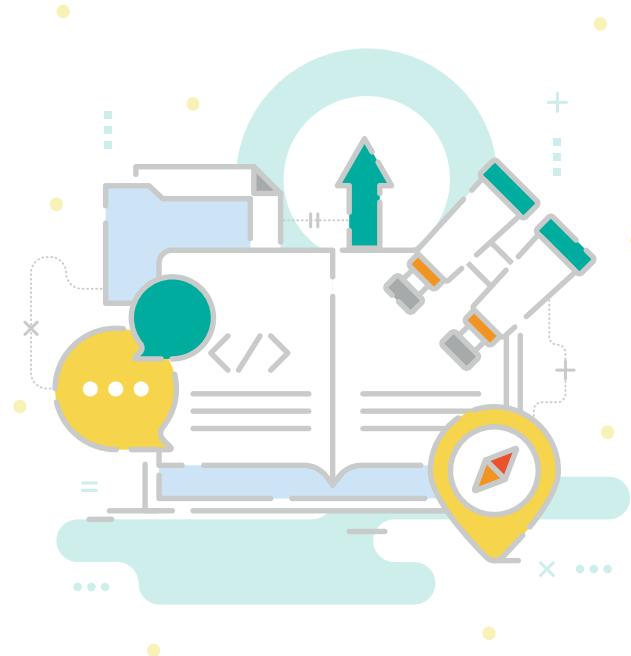
확인

- 문자로 처리결과를 통지하는 경우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광고’나 ‘무료수신거부번호’ 등을 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 처리결과를 14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76조 제3항 제12의3호



9

수신동의 여부 확인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⑧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62조의3(수신동의 여부 확인 방식)

① 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그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수신동의를 받은 날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해당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려는 자는 수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2. 수신자의 수신동의 사실과 수신에 동의한 날짜
3. 수신동의에 대한 유지 또는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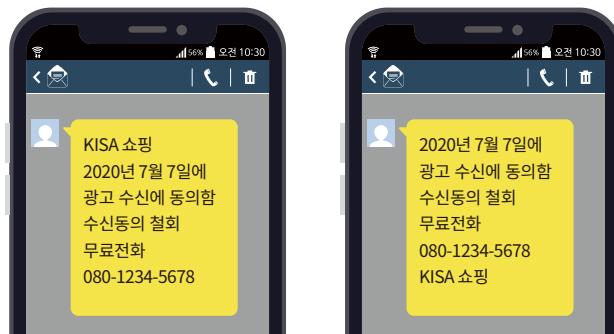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수신을 동의한 자에게 동의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 확인해야 함

-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①전송자의 명칭, ②수신동의 날짜 및 수신에 동의한 사실, ③수신동의에 대한 유지 또는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을 함께 안내하여야 합니다.

※ 수신동의 날짜는 수신동의를 한 날짜를 특정하여 명시하여야 하며, 수신동의를 한 특정 날짜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 수신동의자에게 수신동의 했다는 사실에 대한 안내의무를 부과한 것이지, 재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 수신자가 수신동의 여부 안내를 받은 후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수신동의 의사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봅니다.
- 수신동의 후 특정일에 상관없이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수신동의 사실을 안내해주면 됩니다.
 ※ 다음 수신동의 확인은 최초 수신동의 시점부터 2년마다 기산하면 됩니다(안내한 날부터 새로 기산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수신동의 여부 확인이 가능하지만, 수신동의자가 홈페이지에 로그인하기 전까지는 해당 정보가 수신자에게 안내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점에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수신동의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 법에 따라 해당 수신동의자의 정보를 파기하거나 별도 보관을 하는 경우에는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 의무도 소멸됩니다.
- 이용자가 수신 동의와 수신동의 철회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 수신동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수신동의 사실을 안내해주면 됩니다.
- 문자 SMS를 통해 안내하는 경우 안내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매 2년마다 수신동의여부 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하도록 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76조 제1항 제9의2호

10 광고전송 위탁

법률

제50조의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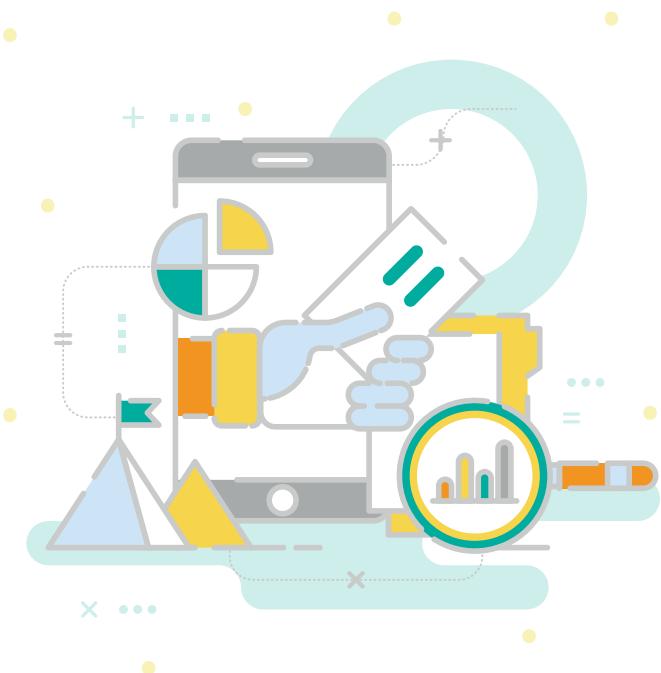
- 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한 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자가 제50조를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위탁받은자는 그 업무와 관련한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에 있어 정보 전송을 위탁한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위탁한 자)가 타인(수탁자)에게 해당 업무를 맡긴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준수하여야 할 의무사항(제50조)을 수탁자가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위탁자에게도 배상책임이 있음

- “위탁한 자”란 광고성 정보의 전송에 대한 실질적 권한 및 의무를 계약을 통해 타인에게 위임한 자이며, 이때 위임을 받은 타인이 “수탁자”가 됩니다.
- 위탁한자는 수탁자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것에 대해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손해발생시 배상책임도 있습니다. 이 법 제50조의3제2항에 근거해, 수탁자는 위탁자의 소속직원으로 간주하기에, 위수탁계약서에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도, 영리목적성 광고를 전송받은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1차적인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무를 위탁한자는 수탁자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것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여야 합니다.
- 전송될 광고문안의 작성이나 광고대상자의 선정 등과 같이 업무에 관여하는 경우나 광고성 정보 전송 업무처리를 약정한 경우 등은 위탁에 해당합니다.

- 발송을 위한 환경만을 제공해 주거나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위탁자가 제공한 연락처로 이미 정해진 광고 내용의 발송업무만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수탁자가 대행할 뿐인 경우에는 위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거부 등

법률

제50조의4(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역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거부조치를 하려면 해당 역무 제공의 거부에 관한 사항을 그 역무의 이용자와 체결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거부조치 사실을 그 역무를 제공받는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부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이나 서비스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①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시스템 등의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②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한 불법스팸이 전송되고 있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음. 이 경우 해당 내용을 서비스 이용약관 또는 이용계약에 명시하여야 하며, 역무 제공을 거부할 경우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²⁾에 따른 전기통신 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합니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는 ‘이동통신사업자’, ‘유선전화사업자’,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서비스제공 사업자’,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 등이 해당 됩니다.

 -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있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치 않는 경우 사업자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의 거부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서비스 제공 거부에 관한 사항이 그 서비스의 이용자와 체결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서비스 이용약관)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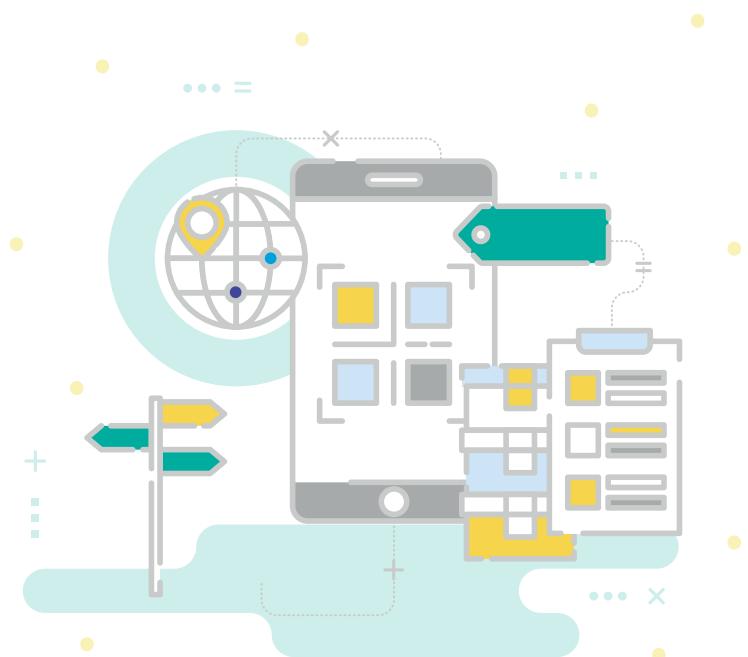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 하는 경우 그 거부 사실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사전에 알려야 하며, 사전에 고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부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 ※ “지체 없이”라 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를 의미합니다.
-
- “필요한 조치”라 함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통신서비스가 법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데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모든 조치를 의미합니다.
- ※ 역무제공 거부 및 정보통신망이나 서비스 취약점 개선은 필요한 조치의 예시에 해당하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불법스팸이 전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가 필요한 조치에 해당합니다.

2) 8. “전기통신사업자”란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신고가 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 제50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해당 역무제공을 거부하지 않거나 취약점을 개선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76조 제3항 제12의4호

※ 필요한 조치의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 필요한 조치에 대한 안내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자료는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https://spam.ki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광고성 프로그램등의 설치

법률

제50조의5(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보이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이용자의 컴퓨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설치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용도와 삭제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63조(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제한 장치)

법 제50조의5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처리장치”란 휴대인터넷·휴대전화 등과 같이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정보를 송수신 할 수 있는 정보처리장치를 말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보이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자의 컴퓨터 등(정보처리장치)에 설치하려면 해당 프로그램의 용도와 삭제방법을 고지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이 조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정보처리장치에 광고성 정보가 보이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이용자가 스스로 본인의 정보처리장치에 광고성 정보가 보이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광고성 정보가 보이도록 하는 프로그램”은 악성 스크립트³⁾ 및 Adware⁴⁾ 등으로, 이 프로그램 설치로 인해 광고성 정보가 노출되도록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정보처리장치란” 컴퓨터, 휴대전화, 태블릿 PC 등과 같이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정보를 송수신 할 수 있는 장치를 의미합니다.
- 사업자는 이용자의 컴퓨터 등에 광고성 정보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설치된다는 사실을 인지시키고, 해당 프로그램의 용도와 삭제 방법 등이 안내된 상태에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프로그램 설치 시 “프로그램을 설치하시겠습니까?”에 대해 이용자가 “예”를 선택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자가 광고성 정보가 노출된다는 사실에 대해 충분히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용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본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가 보이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자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한 자의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76조 제1항 제10호

3) 특정 사이트가 광고효과를 높이기 위해 웹사이트를 접속하면 이 웹사이트에 프로그램 되어져 있던 Java Script나 Active•X Component들이 자동으로 접속자의 시스템에서 실행되어 웹 브라우저의 초기 시작페이지 및 컴퓨터의 부팅 시에 자동으로 시작되게 하는 레지스트리 키 값을 추가하거나 변경 프로그램
4) Adware는 일반적으로 쉐어웨어 제작자가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제공하는 대가로 설치이전에 사용자의 '동의'를 얻은 후에 시작 페이지가 특정 사이트에 고정되거나 프로그램 사용시 사용자의 일부 정보(사용자의 동의를 얻은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상업 광고를 프로그램 중간에 삽입되게 하는 프로그램

13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법률

제50조의7(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 ① 누구든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려면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별도의 권한 없이 누구든지 쉽게 접근하여 글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의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 한다.
- ②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명시적으로 게시 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타인이 운영하는 카페나 블로그 등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려고 하는 경우,

- 해당 게시판의 관리자나 운영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 게시판의 관리자나 운영자가 게시 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동의를 철회한 경우 게시하면 안됨
 - 위반 시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삭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수신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게시판 운영자 또는 관리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는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SNS 등 광고성 정보를 온라인 상에서 게시할 수 있는 모든 곳을 의미합니다.

- “별도의 권한 없이 누구든지 쉽게 접근하여 글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은 로그인이 불필요하거나 별도 인증과정 없이 누구나 접근가능한 곳을 말합니다.
-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광고성 정보의 게시를 동의하였더라도 이후에 거부하거나 동의 철회를 하는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면 안됩니다.
-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게시를 거부하거나 동의 철회의 의사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명시적으로 게시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의 제한은 없습니다.
-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게시 거부의사는 메인화면 또는 해당 게시판의 공지사항 등을 통해 알릴 수 있습니다.
- 거부 의사표시로 “광고글이나 남에게 피해가 되는 글들은 예고 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와 같은 문구도 거부대상 특정 및 거부 의사표현이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광고성 정보에 대한 게시를 거부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광고성 정보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거나 거부 후 게시된 광고성 정보는 운영자나 관리자가 별도의 공지 없이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광고게시 동의를 받지 않거나 광고게시 거부의 의사표시 이후에 광고성 정보를 게시한 자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하도록 한 자의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76조 제1항 제1호

14 법률에서 금지하는 광고성 정보의 전송 금지

법률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 전송 금지

- 마약, 불법대출, 도박, 성매매, 불법의약품, 청소년유해물 등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안됩니다.
-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는 허가받지 않은 사업자가 운영하는 재화 및 서비스도 이에 포함됩니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사의 서비스를 통해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되는 경우 수신동의 및 표기의무 사항 준수와 상관없이 역무제공 거부(서비스 계약해지 등) 또는 차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령에서 광고에 대한 처벌⁵⁾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별도로 본 규정도 적용됩니다.
-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6호

5)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및 약사법 제61조 등

15 법 위반 행위를 하도록 한 자

법률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8.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밝혀야 하는 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밝힌 자
9. 제50조제6항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자
- 9의2. 제50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10. 제50조의5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을 설치한 자
11. 제50조의7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한 자



불법스팸 전송행위를 시킨 자도 전송자와 동일하게 처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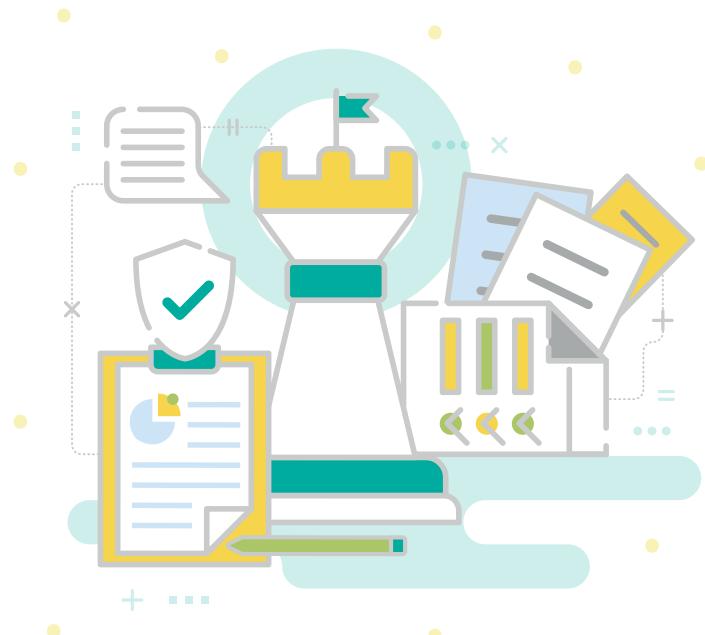
-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란 영업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해당 광고행위를 하도록 직·간접적으로 지시하거나 요구, 지원, 선동, 조장, 유도, 공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사업자가 자사 고객으로 하여금 고객의 지인에게 친구추천 등의 이벤트를 통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도록 하는 경우 등

- 간접적인 지시나 요구 등의 행위 판단 기준으로는 ① 해당 광고자의 마케팅 실적에 따라 이익을 배분하는 경우, ② 불법스팸을 전송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지속적으로 활용되도록 방치하거나 이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경우, ③ 광고를 하게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정황*이 존재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 객관적 정황의 사례 : 대리점들의 광고 패턴이 유사하여 본사가 대리점 등에 광고 패턴을 제공한 것으로 판斷 할 수 있는 경우 등

- 마케팅의 일환으로 이용자의 지인에게 이벤트 문자 등을 전송할 수 있도록 시스템(문자발송 환경 및 정보내용 등)을 제공하고 이벤트 문자를 전송한 고객에게 일정한 혜택을 주는 경우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를 하도록 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법 위반행위를 하도록 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III

부 록

1. 전송매체별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3. 정보통신망법 스팸 관련 규정

III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부 록

부록 1 전송매체별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

1 전자우편

가. 제목의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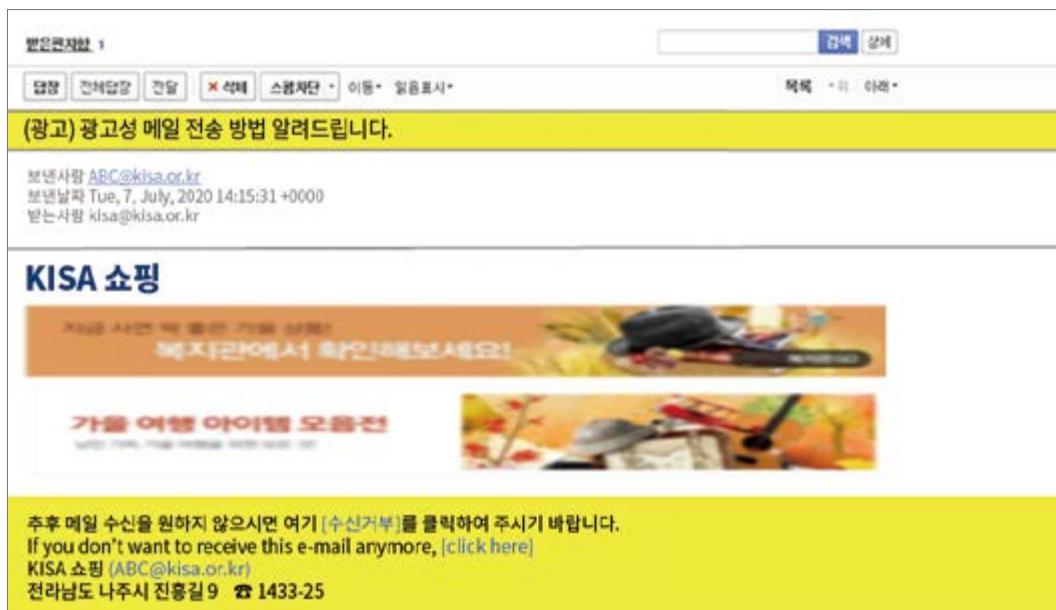
-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나. 본문의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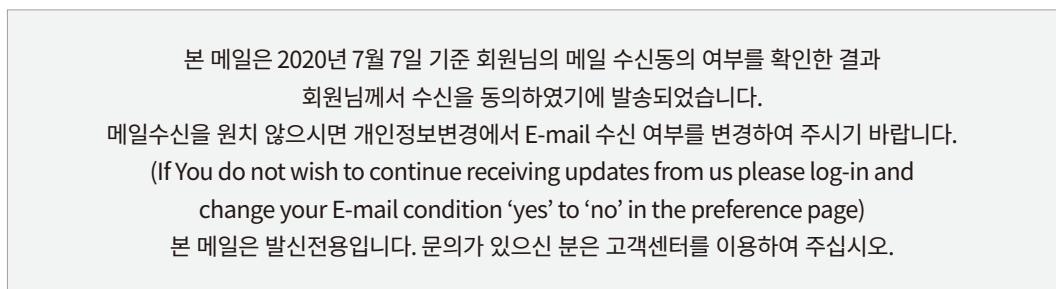
- 본문에는 전송자의 명칭·전자우편주소·전화번호 및 주소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이메일 광고의 경우 발신 전자우편주소가 회신이 되어 수신이 가능한 주소인 경우 본문에 전자우편주소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수신자가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의 의사를 쉽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내문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수신자가 본문 내에 ‘[수신거부]’ 등을 눌러 곧바로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간단히 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 로그인을 요구하는 등 다른 정보를 요구하여 절차를 번거롭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 이러한 안내문과 기술적 조치는 한글 및 영문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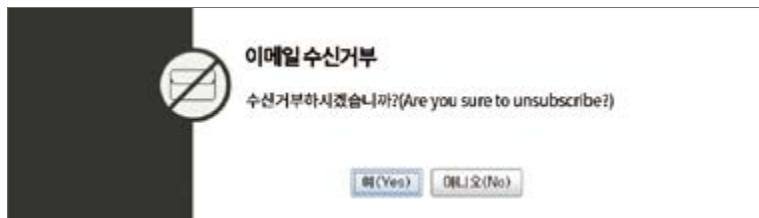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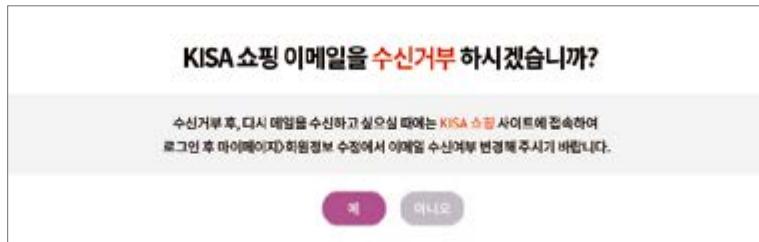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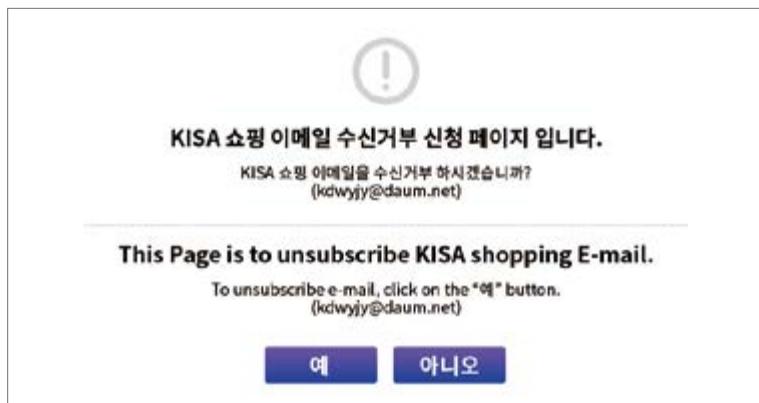
다.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 예시



- 아래와 같이 메일 화면에서 곧바로 수신거부를 할 수 없도록 하여서는 안됩니다.



- [수신거부] 클릭시 아래와 같은 화면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 [수신거부] 클릭시 아래와 같이 로그인 등을 요구하면 안됩니다.



2 모사전송(팩스)

가. '(광고)' 등 표시

-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전송자의 명칭, 전화번호 및 주소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광고)', 전송자 명칭, 연락처 등은 광고 본문 내용이 나오기 전에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방법

-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전화번호 또는 전화에 갈음하여 쉽게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해당 광고에 표시된 최대글자의 3분의 1 이상의 크기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 위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하는 때에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함을 함께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 예시



3 음성형태로 전송되는 광고

가. 광고의 안내

-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를 의미하는 음성, 전송자의 명칭, 전화번호 또는 주소,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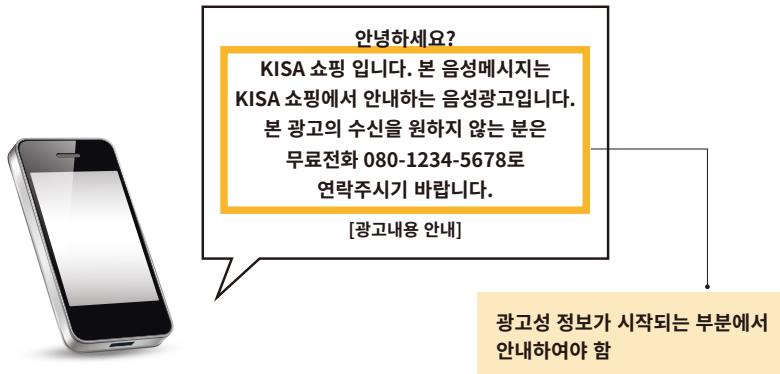
※ 전화번호 및 주소의 경우 전화번호와 주소를 모두 표시하여야 하지만 전화번호 또는 주소의 경우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하면 됨

- (광고), 전송자 명칭, 전화번호 또는 주소, 수신거부 방법 등은 광고 본문 안내가 나오기 전에 안내하여야 합니다.

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방법

-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용 자동응답전화번호 등의 전화번호 또는 전화에 갈음하여 쉽게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하는 때에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함을 함께 안내하여야 합니다.

다.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 예시



4 그 밖의 형태로 전송되는 광고

가. '(광고)' 등 표시

-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를 표시하고, 수신자가 어디에서 온 광고인지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전송자의 명칭과 전화번호 또는 주소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광고), 전송자 명칭, 전화번호 또는 주소는 광고 본문 내용이 나오기 전에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 문자광고의 경우 연락처가 회신번호와 동일하고 통화버튼을 눌러 바로 연결이 되는 경우에는 연락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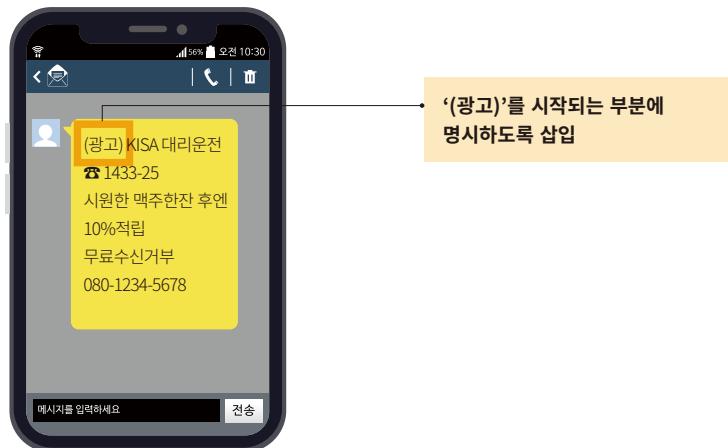
- LMS 및 MMS 문자와 같이 제목을 넣어 전송이 가능한 경우 (광고), 전송자 명칭 등은 반드시 광고 본문 내용 맨 앞에 넣어 전송하여야 하며, 제목에 넣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 휴대전화 별로 제목이 표기되는 휴대전화도 있지만 표기되지 않는 휴대전화도 있습니다.

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방법

-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용 전화번호 또는 전화에 같음하여 쉽게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광고성 정보가 끝나는 부분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것과 함께 안내하여야 합니다.
-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별표6에서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함을 함께 안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임은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 예시



5 공통사항

I

II

III

부록

가. '(광고)'의 표시 기준

- (광고)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필터링)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빈칸·부호·문자 등을 삽입하거나 표시방법을 조작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광/고), (광 고), (광.고), (“광고”), (대출광고), (廣告), (ad)와 같이 변칙 표기하여서는 안됩니다.
- 전송자가 통신사업자, 수신자 등의 필터링을 방해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이나 특수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광고성 정보의 표시의무사항을 이미지파일로 하여 전송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 수신자가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하는 때에 전송에 이용된 수신자의 연락처 외의 정보를 전송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어렵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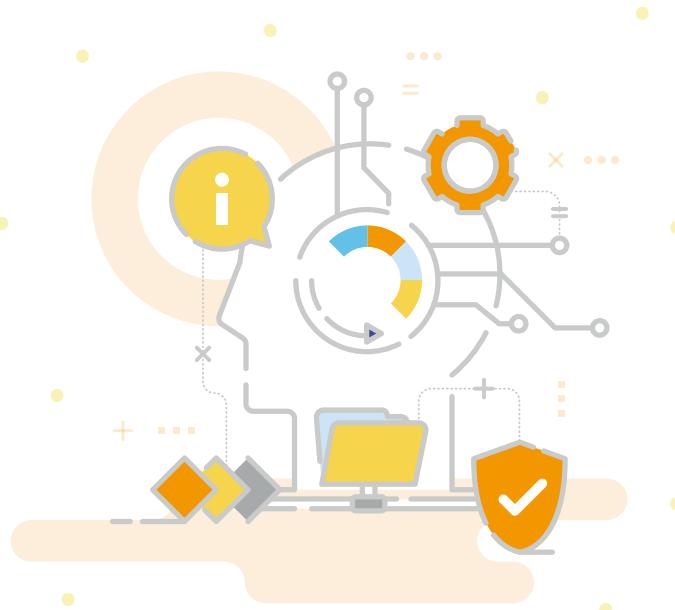
6 전송매체별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 관련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 (시행령 제61조제3항 관련)

매체구분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
공통	<ol style="list-style-type: none">(광고)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수신자의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빙칸·부호·문자 등을 삽입하거나 표시방법을 조작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수신자가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하는 때에 전송에 이용된 수신자의 연락처 외의 정보를 전송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
전자우편	<ol style="list-style-type: none">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를 표시해야 한다.본문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ol style="list-style-type: none">전송자의 명칭·전자우편주소·전화번호 및 주소수신자가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를 쉽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내문을 명시하고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여부를 간편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안내문과 기술적 조치는 한글과 영문으로 명시해야 한다.
모사전송	<ol style="list-style-type: none">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전송자의 명칭, 전화번호 및 주소를 표시해야 한다.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용 자동응답전화번호 등의 전화 번호 또는 전화를 같음하여 쉽게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해당 광고에 표시된 최대 글자의 3분의 1 이상의 크기로 명시하고, 그 전화번호나 방식을 이용하여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하는 때에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함께 명시해야 한다.

매체구분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	I II III 부록
그 밖의 전자적 전송매체	<p>1. 음성형태로 전송되는 광고의 경우</p> <p>가.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를 의미하는 음성, 전송자의 명칭, 전화번호 또는 주소,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안내해야 한다.</p> <p>나.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용 자동응답전화번호 등의 전화번호 또는 전화를 갈음하여 쉽게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이용하여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하는 때에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함께 안내해야 한다.</p> <p>2. 음성 외의 형태로 전송되는 광고의 경우</p> <p>가.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전송자의 명칭과 전화번호 또는 주소를 표시해야 한다.</p> <p>나.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용 자동응답전화번호 등의 전화번호 또는 전화를 갈음하여 쉽게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정보가 끝나는 부분에 명시하고, 그 전화번호나 방식을 이용하여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하는 때에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함께 명시해야 한다.</p>	



부록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1 형사처벌

위반 조항	처벌
제50조제5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50조의8	

2 과태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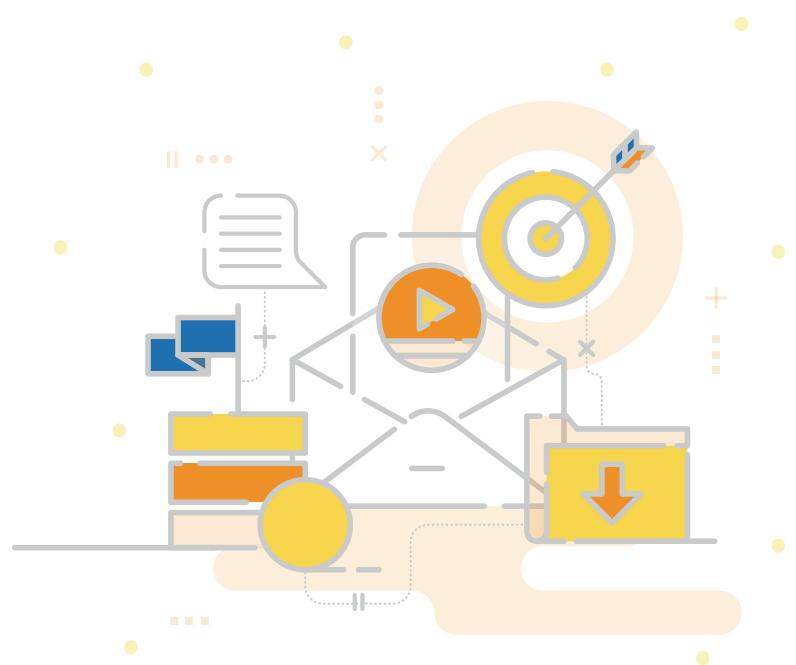
위반 조항	처벌
제50조제1항~제4항, 제6항, 제8항	
제50조의5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50조의7제1항, 제2항	
제50조제7항	
제50조의4제4항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

(단위:만원)

위반 조항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제50조제1항~제4항, 제6항, 제8항 제50조의5 제50조의7제1항, 제2항	750	1,500	3,000
제50조제7항 제50조의4제4항	300	600	1,000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됨
-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 행위만 해당)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함



부록 3 정보통신망법 스팸 관련 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처벌
<p>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p> <p>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p> <p>1. 재화 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취급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동종의 재화 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p> <p>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 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p>	<p>제61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p> <p>① 법 제5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이란 해당 재화등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을 말한다.</p>	3천만원 이하 과태료
<p>②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p>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p>③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법 제5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란 전자우편을 말한다.</p>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처벌
<p>④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2.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p>③ 법 제50조 제4항에 따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자가 해당 정보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과 그 방법은 별표 6과 같다.</p>	3천만원 이하 과태료
<p>⑤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방해하는 조치 2.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4.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 5.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조치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p>⑥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62조(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의 제공)</p> <p>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 전화서비스 등을 해당 정보에 명시하여 수신자에게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p>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처벌
⑦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가 제1항에 따른 사전 동의, 제2항에 따른 수신거부의사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해당 수신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 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p>제62조의2(수신동의 등 처리 결과의 통지)</p> <p>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수신자에게 알려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송자의 명칭 2. 수신자의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사실과 해당 의사를 표시한 날짜 3. 처리 결과 	1천만원 이하 과태료
⑧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p>제62조의3(수신동의 여부의 확인)</p> <p>① 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그 수신 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수신동의를 받은 날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해당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려는 자는 수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송자의 명칭 2. 수신자의 수신동의 사실과 수신에 동의한 날짜 3. 수신동의에 대한 유지 또는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처벌
<p>제50조의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p> <p>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한 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50조를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위탁받은 자는 그 업무와 관련한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에 있어 정보 전송을 위탁한 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p>	-	
<p>제50조의4(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p> <p>1.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역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p> <p>2.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p> <p>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거부조치를 하려면 해당 역무 제공의 거부에 관한 사항을 그 역무의 이용자와 체결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p> <p>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거부조치 사실을 그 역무를 제공받는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부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p> <p>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이나 서비스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4항 위반 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처벌
<p>제50조의5(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p> <p>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보이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이용자의 컴퓨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설치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용도와 삭제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p>	-	
<p>제50조의7(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p> <p>① 누구든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려면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별도의 권한 없이 누구든지 쉽게 접근하여 글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의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 한다.</p> <p>②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명시적으로 게시 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p>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p>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p> <p>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p>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방송통신위원회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